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충북미래관의 위치(안 제2조)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둠

나. 충북미래관의 기능(안 제3조)

- ▶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 ▶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 ▶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위탁운영(안 제4조)

- ▶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함.
- ▶ 도지사는 위탁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사용료의 부과(안 제6조)

-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시설물과 물품의 무상사용 규정 마련
  - 충북학사 기숙사 기능수행 등을 위한 수탁법인
  -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마.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충북미래관 내”로 변경
  - 제8조제3항을 삭제

## 4. 검토의견

### 가. 개정개요

제정조례안은 충북미래관 건립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이 제정조례안은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미래관의 위치(안 제2조), 충북미래관의 기능(안 제3조), 충북미래관의 위탁운영(안 제4조), 충북미래관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안 제6조),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북미래관의 위치(안 제2조)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둠
  
- 충북미래관의 기능(안 제3조)
  - ▶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 ▶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 ▶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운영(안 제4조)
  - ▶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함.
  - ▶ 도지사는 위탁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의 부과(안 제6조)
  -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 시설물과 물품의 무상사용 규정 마련

- 충북학사 기숙사 기능수행 등을 위한 수탁법인
-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충북미래관 내”로 변경
- 제8조제3항을 삭제

금번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미래관의 위치, 충북미래관의 기능, 충북미래관의 위탁관리, 충북미래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부과 등과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이 규정되어 있음.

충북미래관은 시설이 낙후된 충북학사를 대신하여 건립된 것으로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충북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및 학습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의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그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

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